

장산마을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장산마을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시설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소관 육군 제7376부대장 및 육군 제7376부대 계약담당공무원)을 "수요자"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3조(수요자의 업무분장)

- ① 육군 제7376부대장은 육군 제7376부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육군 제7376부대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육군 제7376부대장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 시행의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육군 제7376부대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대제7376부대금 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육군 제7376부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착수 및 보고)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이행 약속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신고서를 수

요자에게 제출한 뒤 승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본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의 수정·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조치방안에 대해 수요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 2.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 ②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인수 계획서 및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 계획서, 교체사유서,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할 일체의 책임 및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진다.
-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 ⑥ 계약상대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사업관리 및 감독)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매주 금요일(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 16:00까지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수요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본 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내용과 달리 계약을 이행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본 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수요자의 협조의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제8조(검수)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5근무일 전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다만,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며, 계약상대자가 검수절차에 협력한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업내용의 변경)

- ①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정계약의 체결)

-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정계약 요청 사유 및 관련 근거 문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10근무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 사항은 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수요자는 본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12조(대금청구 및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다만, 대금청구를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계약상대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 ② 본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 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이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요자는 은행 계좌의 명의를 계약상대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한다.
-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지연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자보수 등)

-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관련 법령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10근무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하자보수 완료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하자 또는 미흡한 하자보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하자보수 요구시로부터 하자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⑤ 본 조의 조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하자보수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기일까지 수요자에게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와 하자보수지원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17조(부당이득금의 환수)

- ①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수요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 ② 수요자가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해제 또는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자의 시정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 측 관계자가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보안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또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의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도달이 어려울 경우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지체상금)

-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20조(계약문서)

-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입찰공고문
 3. 과업지시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 ⑤ 기타 계약상대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본 계약상 계약상대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계약상대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장산마을 아파트 공용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관련 부대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22조(설치 위치 및 수량)

- ① 충전시설 설치 위치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주차구역으로 한다.
- ② 설치 수량 및 충전기 종류(완속, 급속)는 현장여건 및 협의 결과에 따른다.
- ③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력 인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상대자의 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충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및 한국전력협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 설치 기준)

- ① 충전시설은 환경부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과 KC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충전기는 표준 통신규격을 지원하여야 하며 원격관제기능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차면 도색, 안내표지판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및 유지관리)

①계약상대자는 24시간 장애접수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운영일은 매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00:00~24:00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무단휴업을 할 수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업이 필요할 시,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승인일로부터 5근무일 안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영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의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 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군사기밀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방보안업무 훈령, 보안규정 등 보안관련 법규

3. 안전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

4. 해당업종의 영업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

⑧ 계약상대자는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영업개시가 불가할 시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후 영업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이용요금)

①충전요금은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②요금변경시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판매품목, 판매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요자 및 계약상대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운영협약서를 수정 및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운영시간, 품목 및 가격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의 면제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감면 또는 조정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제28조(전기요금 및 비용부담)

- ① 충전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② 설치·철거·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9조(투자설비 등 처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까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30조(보험가입)

- ①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같은 훈령 별지 제23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약속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약속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시설의 귀속)

- ① 계약기간 중 설치된 충전시설의 소유권은 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 ②계약 종료시 시설 철거여부는 수요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33조(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②계약기간 만료 전 60일전까지 계약상대자와 수요자 모두 계약 연장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보안사항)

-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군사 관련 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⑦ 본 조에 따른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 ⑧ 계약상대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전속적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6조(전시 계약관리)

- ① 본 계약은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